구매 약관과 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공공 법에 의거해서 해당 기업과 법적 주체와 관련된 상업적 거래에 적용

1. 총칙

BOSCH의 구매약관과 조건은 다음 사항에 전적으로 적용한다. 본 BOSCH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사업 약관과 조건에 벗어나 거나 상충하는 공급자의 약관이나 규정은 반드시 BOSCH에 서면 통보해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이하, "제품"으로 명명) 에 대한 수취 및 대금지불은 계약 요건을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2. 계약의 체결 및 수정

2.1 주문과 계약 사항의 수정 및 추가와 주문과 계약의 집행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2 BOSCH의 구매 약관 및 조건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두 합의는 반드시 BOSCH가 서면으로 확인을 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2.3 문서화된 형태의 요구사항 역시 해당 통신이 원거리 데이터 송신방식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팩스 송신에 의해서인지 상황에 따라 부합되어야 한다.

2.4 비용 견적은 구속력을 지니며 다른 방법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아니한다.

2.5 BOSCH는 만약 공급자가 구매 오더를 받은 후 2주 안에 수락하지 아니하면 오더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2.6 만약 공급업자가 구매 오더를 받은 후 영업일 2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구매 형식을 통해 요구된 구매와 구매 발표 계획은 구속력을 지닌다.

2.7 BOSCH의 공급자 품질보증 가이드라인(QSL), 물류 매뉴얼 및 납품, 포장 규정이 본 계약의 통합적인 면을 이루고 있다.

3. 납품

3.1 BOSCH의 계약 및 주문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난 납품은 오직 BOSCH가 사전에 서면을 통해서 승인을 했을 때에만 받아들여진다.

3.2 상호 합의한 기간 및 날짜는 구속력을 지닌다. 납품 기간 및 납품 일자를 정확하게 엄수했나 하는 여부는 폐사가 제품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운송에 관련된 포워딩 업체와 합의된 선적 및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 안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만약 공급자가 납품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나 증축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형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가 교통비용이나 필요한 도구의 공급, 일일 기본 잡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일시적 비용들을 책임져야 한다.

3.4 성문화된 규정은 상호 합의한 일자가 맞지 않을 때 적용된다. 만약 공급자가 생산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거나 상호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는데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BOSCH의 관련 부서에 그 즉시 통보해야 한다.

3.5 시간이 지연된 납품이나 서비스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지체된 납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클레임에 대한 철회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은 문제가 되는 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BOSCH가 공급자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대금에 적용할 수 있다.

3.6 부분적인 납품은 BOSCH가 해당 입고를 인정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7 제품 입고 검사에서 BOSCH에 의해서 확정된 가치는 입증된 다른 가치에 따른 수량,중량,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3.8 BOSCH는 법적으로 허용된 정도까지 소프트웨어 문서를 포함해서 납품 범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3.9 BOSCH는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정도까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문서를 포함한 여러 문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BOSCH는 가시화된 합의가 없어도 백업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천재지변

자연 재해, 노동자 파업, 운영 장애, 사회 폭동, 정부 조치 및 그 밖의 다른 사건들로서 예정된 납품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사태들, 해당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제품이 다른 생산장소에서 생산되게 되어 우리의 업무 필수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2주 동안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계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BOSCH의 행위는 예외가 된다.

5. 출하 및 청구에 대한 제언

BOSCH의 주문 및 출하의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송장 번호 및 다른 분배 번호를 나타내는 송장을 해당 송부처로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송장은 제품과 같이 선적해서는 안 된다.

6. 가격결정 및 리스크 이전

상호 달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납품가격은 포장 비용 및 관세를 포함한다. 부가세(VAT)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제품을 BOSCH나 BOSCH와 계약을 통해 BOSCH를 대변하는 제 3업체가 정해진 장소에서 수취하기까지는 제품에 대한 모든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대금지불 조건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BOSCH 정기 대금 결제에 준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8. 결함에 대한 클레임

8.1 결점 유무에 대한 조사가 지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적인 상거래상 해당결점에 대한 조사가 최대한 빠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정확성과 완벽성이 갖추어져 있는 범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은 그 구속력이 있다. BOSCH는 결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즉시 발견한 불량 내용을 공급자에 통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자는 결함에 대한 통보가 지체되면 해당 요구 주장을 보류할 수 있다.

8.2 본 납품관련 불량이나 품질 결점에 관련된 규정은 그 밖의 다른 규정을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한다.

8.3 원칙적으로 BOSCH는 추가 보완적인 서비스 집행 형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급자는 만약 BOSCH가 선택한 추가 서비스 형태의 집행이 오직 비용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거부할 수 있다.

8.4 공급자가 BOSCH가 요구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곧 바로 해결하지 않거나, 특히 매우 긴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매우 대량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곧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BOSCH는 자체적으로 이 결함을 시정하거나 또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단,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8.5 상업적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해당 침해에 책임이 있는 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BOSCH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8.6 본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클레임의 한정 기간은 3년이다. 단 관행이나 결함을 초래한 원인을 기초로 해서 건축사업에 해당 사안이 이용된 경우가 아니면 사기성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예외다. 이 한정 기간의 계산은 제품이 납품된 시점에서 시작한다. (리스크 이전)

8.7 만약 공급자가 결함에 의해 대체 제품을 공급 함으로서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집행 의무를 하게 되면 대체 제품으로 납품한 상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 한계는 공급자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대체 제품의 납품이 순수한 의지로 효율적으로 진행 함으로서 논쟁을 피하고 해당 납품 계약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 관계를 유지하게 하지 않는 한, 대체 납품이 끝나고 새롭게 대체해야 한다.

8.8 만약 공급자의 잘못된 납품으로 BOSCH에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특히 운송, 수송, 노동비, 자재비 또는 입고 제품에 대한 처리비용이 일반 비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그러한 형태의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책임 진다.

9. 제품 책임 및 반품

9.1 제품에 대한 책임 클레임이 BOSCH를 대상으로 제기되고 해당 클레임의 원인이 공급자가 BOSCH에 제공한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기인했다면 공급자는 BOSCH가 해당 클레임으로부터 어떤 손실을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이 규정은 오직 결함이 공급자에 의해서 원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한다. 해당 손상의 원인이 공급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발생한 것이면 공급자는 해당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9.2 위의 규정 9-1에서 공급자는 법정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책임져야 한다.

9.3 그 밖의 다른 모든 관점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9.4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된 제품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반품이 발생하면, BOSCH는 이에 대해 어떤 시정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먼저 공급자에게 통보함으로서 공급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 공급자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우 긴밀한 비상사태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급자와 상의해서 공급자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반품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반품이 공급자가 BOSCH에 납품한 제품이 원인이면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10. 계약업무 수행

본 계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본 BOSCH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플랜트의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본 BOSCH의 공장에서 종사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BOSCH의 업무처리 담당자 또는 BOSCH의 법적 대변인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태만했거나 실질적인 업무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OSCH가 책임 지지 않는다.

11. 원자재 규정

BOSCH가 공급한 원자재, 부품 및 컨테이너, 특수 포장재는 BOSCH의 재산으로 남는다. 이 재산들은 오직 계약상 규정한대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 원자재들은 BOSCH의 요구 조건대로 공정 처리되고 부품들은 조립되어야 한다. 계약 합의는 BOSCH가 제공한 원자재나 부품으로 제조한 본 제품은 그 완성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BOSCH가 제공한 원자재나 부품의 가치만큼 BOSCH의 본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자는 본 BOSCH 재산의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안전한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

12. 문서처리 및 대외기밀 보장

12.1 공급자는 본 BOSCH와의 계약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사업적, 기술적인 정보들을 공급자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들이 일반화되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품,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전문지식 및 노하우 등을 포함). 단, 본 정보는 공급자의 사업 범위 안에서 BOSCH의 납품 업무와 관련해서 본 정보를 필요로 하고 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급자 측의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의 소유권은 BOSCH에 있다. 이 정보를 BOSCH로부터 사전에 서면을 통해 승인을 받지 않고 BOSCH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회람이 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BOSCH가 제공한 모든 정보 (가능하면 만들어진 기록의 모든 사본까지 포함) 및 아이템을 반환하거나 파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BOSCH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BOSCH는 이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저작권 및 특허 및 유틸리티 모델, 반도체 보호 등과 같은 산업 재산권에 대해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BOSCH가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반드시 BOSCH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2.2 설계나 특정 BOSCH모델 등과 같은 BOSCH가 고안하고 창조한 문서를 기초로 해서 제조한 제품과 BOSCH의 툴(TOOL)을 모델로 만들어진 툴이나 실제 BOSCH의 툴을 이용해서 제조한 제품이나 BOSCH의 고급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제 3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 역시 서면을 통해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3. 수출 관리 및 세관규정

공급자는 본 제품의 원산지 국가의 수출관련 적용 가능 법률이나 관세 규정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 또는 미국의 수출관련 법률 및 세관규정이 요구하는 본 제품에 필요한 모든 적용 가능한 면허나 필수 요건에 대해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최소한 오퍼, 주문 확답서, 송장 등을 통해서 본 제품과 관련된 다음 아래의 정보들을 BOSCH에 제공해야 한다.

-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이나 부품의 원산지 표시
- 미국을 경유하는 제품의 운송경로, 미국에서의 제품의 제조 및 보관 정보 그리고 제품이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되었는지 여부.
- 제품의 HS-코드
- BOSCH가 요청할 경우 BOSCH에게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담당자.

공급자는 BOSCH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이나 부속품에 관련해서 그 밖의 다른 국제 거래 데이터를 서면으로 BOSCH에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에 다른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BOSCH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지체 없이 BOSCH에 통보해야 한다.

14.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공급자는 BOSCH와의 계약 서비스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 환경보호 및 보건, 안전, 작업장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ISO14001에 의거한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공급자는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노동 및 유아 노동착취를 폐지하고 노동조합 권리 및 국제 인권보호와 근본적으로 결부된 UN 글로벌 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본 UN 글로벌 콤팩트 이행 보고서의 상세 정보는 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www.unglobalcompact.org.

15. 사업장소

사업장소란 본 계약에 의거해서 제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장소를 의미한다.

16. 기타 사항

16.1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한 본 계약의 약관이나 조건 및 추가 사항들 중의 하나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항이나 계약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양 측은 효력을 잃은 조항이나 규정을 경제적인 측면이나 내용면에서 가장 근접하는 다른 조항으로 대치하는데 합의할 의무가 있다.

16.2 본 계약관계는 법률 간의 마찰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일반 상업 관행에 따라 양측 대표자가 최종 해결한다. 양측 대표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며, 양측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16.3 본 계약의 체결과 집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BOSCH의 관할 지방 법원으로 한다. BOSCH는 자체 판단을 기준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우선하는 법적 권위로 재판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공급자의 본점이나 지점이 위치하는 장소가 아닌 BOSCH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급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